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52

발의연월일: 2022. 12. 7.

발 의 자:이성만·강득구·김교흥

김홍걸 • 박완주 • 서영교

송옥주 · 이학영 · 이형석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, 국민의 알권리 보장,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 중 대부분이 신분증 증명 사진으로 얼굴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사진이 검찰 송치 때의 실제 얼 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. 특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 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행 신상공개의 한계가 존재함.

이에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

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	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른 얼굴, 성명 및
	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
	정보 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